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11. 21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 : 2008. 10. 10
- 다. 위원회회부 : 2008. 10. 13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제정이유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수원으로서 건전한 지하수 활용과 안전한 청정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제정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된 지하수법(2005. 5. 31)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수질측정시설,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수질검사 항목을 제외함을 규정 (안 제3조)
- 나.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수 영향, 오염, 정화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9조)
- 다.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마포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자원조성 및 세입·세출 용도를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납입절차 등에 대해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내지 제2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불임
- 다. 기 타
 - 1) 제정문안 : 불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9. 4 ~ 9. 24) 결과, 의견제출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8. 9. 26) 결과, 규제신설(비중요규제)

5. 검토결과

○ 제출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07. 5. 31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 구성 및 주요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형식상 총 2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

안 제3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수질측정시설,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수질검사항목을 제외토록 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9조까지는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포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수 영향, 오염, 정화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고 위원은 9인 이내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자원마련과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25조까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후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산정방법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9조)은 하수도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별표8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9. 1. 1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정 현황은 2007년말 현재 총203개소로 이용량은 연간 532,233톤이며 허가시설이 8개소, 신고시설이 195개소이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은 168개소 503,234톤이며 미부과대상은 35개소 28,999톤입니다.

○ 조례안 검토사항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일부 자원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고, 지하수의 사용억제 및 수질오염의 감소에는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용자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업무량은 신규로 0.96명이 소요되며 수입은 3,000만원으로 예상되나, 지출은 신규인력 인건비 등으로 3천 5백여만원, 운영비로 1천 4백여만원 등 총 4천 9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구는 은평구 한 곳 밖에 없는 등 조례 제정도 미미한 실정에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자의 반발, 운영에 따른 경제성 및 효과성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 2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시장 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량 산출

❖ 예상 업무량 산출

업 무 내 용	업무주기 ①	소요시간 ②	연간 총소요시간 ③=①×②
총 계			2,220시간
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시설 자료정리/입력 ○ 요금부과·징수(고지서발송등)	6회×10일/회 6회×10일/회	10hr/일 6hr/일	6×10×10=600 6×10×6=360
②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관리 ○ 체납관리 ○ 기타(계량기 교체 및 민원처리)	12회×10일/회 12회×10일/회	2hr/일 4hr/일	12×10×2=240 12×10×4=480
③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운영관리	12회×5일/회	3hr/일	12×5×3=180
④ 계량기 검침업무 ○ 계량기 검침안내 및 대장정리	6회×15일/회	4hr/일	6×15×4=360

❖ 소요인력 산출 = 2,220시간 / 2,320시간/명 ≒ 0.96명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예상 수입 및 지출 경비

2009년 예상 수입	2009년 예상 지출
30,000천원	49,193천원
<p>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2007년말 사용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톤×80원/톤=40,000천원 <p>징수율 및 폐공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천원×0.75=30,000천원 	<p>인력운영비(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행정8) - 1,640,300*1명*12월=19,683,600원 ○ 정근수당 - 19,683,600원*1/12*0.96=1,574,68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원*1명*12월=72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 6,564원*1명*54시간*12월=4,253,470원 ○ 교통보조비 - 120,000원*1명*12월=1,440,000원 ○ 가계지원비 - 1,640,300*16.7%*12월=3,287,160원 ○ 연가보상비 - 1,640,300*1/30*11일=601,440원 ○ 명절휴가비 - 1,640,300*0.6*2회=1,968,36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1,560,000원 ○ 합 계 : 35,088천원 <p>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개발이용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유인물 150원*1,000매*2회 - 각종서식인쇄 35원*1,000매*6종 ○ 수질검사용 채수병 500개*1,000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산고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고지서 50,000원*7박스 - 창문봉투 30원*2,000매 - 일반봉투 25원*1,000매 ○ 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우편 300원*1,000매 - 등기우편 1,800원*200매 ○ 지하수관측시설 시설유지보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원*7개소= ○ 관측시설 유지관리 정검용역(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4,280원*7개소 ○ 합 계 : 14,105천원